



원산지 분야 주요 위반사례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례	벌칙
제5조 원산지표시	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 혼동 목적으로 손상, 변경	
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6개월 보관 미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전열하는 모든 사람

음식점(일반,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납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축산물분야 주요 위반사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례	비고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냉장축산물 냉동축산물로 보존·유통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제8조 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2조 영업의 허가	무허가 영업(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요사항 변경허가 미이행	
제24조 영업의 신고	미신고 영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운반업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 일부 또는 전부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서류 미작성·미보관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 거짓작성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 미작성 / 미보관(6개월)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냉동축산물 해동 후 냉장축산물로 보관 / 판매	
	냉동식육가공업 해동 후 냉장식육가공업으로 판매	
	거래명세서 원산지 거짓표시 발급	
	불량 식용란(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알) 판매	
	허위표시 식용란 판매 / 판매목적 보관	
	도축검사증명서 미보관	
위생교육 미실시(매월 1시간 이상 실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 판매목적 보관

※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시행 [2019. 3. 14.]